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

■ 서삼석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1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 | 2 |
| IV . 입법의 재정영향 .....                             | 6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3. 9.
3. 회 부 일 : 2026. 3.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

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Ⅲ. 검토의견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정원을 25인에서 28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 ② (생략)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28명-----.                                |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                                        |
|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 -----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개요 ]

| 구분    | 세부내용                                                                                                                                                                                                                                                                                                                                                                                      |
|-------|-------------------------------------------------------------------------------------------------------------------------------------------------------------------------------------------------------------------------------------------------------------------------------------------------------------------------------------------------------------------------------------------|
| 목적    | □ 농어업 및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
| 구성    | <p>□ 총 25인 이내</p> <p>○위원장: 국무총리</p> <p>○당연직 위원</p> <p>-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p> <p>*대통령령 미제정</p> <p>○위촉직 위원: 아래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p> <p>① 농어업인</p> <p>②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p> <p>③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
| 심의 사항 | <p>○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p> <p>○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p> <p>○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p> <p>○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p> <p>○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재구성

그동안 농어촌은 같은 통신요금제를 사용하여도 대도시에 비하여 낮은 속도로 이용한다거나,<sup>1)</sup> 손해보험사들이 도서·산간 지역에는 긴급 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일상적인 서비스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지적<sup>2)</sup>되어 왔으며, 이는 농어촌

1) 2025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2)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보편적 의무 제도에 따라, KT를 의무제공 사업

거주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삶의질위원회에 ① 보험·통신 등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장”, ② 도서·산간 지역의 서비스 차별에 대한 시장 왜곡 시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장”, ③ 정부의 재정정책과 인구정책·지역균형발전 등 미래전략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장”을 삶의질위원회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무총리는 삶의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므로, 현재도 국무총리가 해당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삶의질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총괄·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로 판단됨.

한편, 현재 삶의질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어업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고충

---

자로 지정하고, 이용자 신청 시 통신사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도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하거나, 농축협 금융점포에 대한 시설보조비 지원을 통해 농축협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촌지역의 은행 창구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sup>3)</sup>

|              |
|--------------|
| 문 의 처        |
| 02)6788-5417 |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